





(별지 제1-3호 서식)

#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

〈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〉

신청자	생산자단체 등의 명칭			법인등록번호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
	성명 (대표자명)						생년월일		
							성별	남, 여	
	주소						전화번호	(주택) (휴대폰)	
							이메일		
농업법인 형태		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			
본인명의 환급계좌		(은행명)		(계좌번호)					
신청농지(필지)								신청 항목	
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지목	지적 (㎡)	시설 여부	인증 구분	작물	토양검정	시비처방 등 컨설팅
			1. 논 2. 밭			1. 유기인증 2. 무농약인증 2. 관행농업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구분	토양검정 신청 필지수(개) / 총면적(㎡)								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영통구청장 귀하									

붙임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## ※ 작성 요령

-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: 단체는 '단체명', 개인은 '개인'으로 기재
- 신청 항목 :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



(별지 제2호 서식)

# 서 약 서

- 성명(생년월일) :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, 천적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·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및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, 제재 부과금 부과,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신청인 :

(서명 또는 인)

영통구청장 귀하